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정 경 희

방 효 정

최 현 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건보자료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난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
I . 개요 ··································
Ⅱ. 노인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실태 5
Ⅲ. 제특성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 12
나라 무호스 리사스위비 나시시 > 모 리 페이키에 리시
사례 도출을 지역유형별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 파악
I. 다양한 사례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 14
Ⅱ.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16
Ⅲ. 지역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의 제특성 22
노인의 기본특성 및 소득재산실태에 관한 건보자료와 노인
관련 조사자료와의 비교
I . 소득 및 재산 범위의 차이점25
Ⅱ. 노인의 결혼상태 및 거주유형25

<건보자료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난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

<요 약>

- □ 노인의 경우 국세청을 통해 파악되는 소득이 있는 비율은 6.8% 에 불과하며 이 비율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70세 이상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노인의 51.3%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2.3%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 재산의 경우도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70세 이상의 경우 보유율이 낮음.
- □ 노인가구의 33.1%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으며
 - 소득은 없으나 재산이 있는 노인가구가 34.8%, 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없는 노인가구는 4.7%임.
 - 노인가구의 28.4%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 노인가구의 유형별 차이가 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비율은 독신노인가구 46.3%, 부부가 모두 노인인 노인가구 10.0%, 부부중 1인만 노인인 가구가 5.5%임.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비율은 부부중 1인만 노인인 가구가 65.8%, 부부가 모두 노인인 노인가구가 43.2%, 독신노인가구가 14.6%임.
 - □ 제시된 소득인정액기준(금융소득을 일괄합산하기 전 기준: 독 신노인 36만원, 유배우노인 57만6천원) 이하의 가구에서 생활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69.4%로
 -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60.7% vs 74.2%)이, 70에 이상의 노인이(59.1% vs 76.5%), 전라남도(84.7% vs 서울시 54.9%)가 타 시도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제시된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갖고 있는 가구는 노인가구의 71.8%이며 독신노인의 경우가 81.4%로 64세 이상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49.5%)나 65세 이상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59.3%)에 비하여 높음.

I | 개요

□ 목적: 가용한 전수자료 분석을 통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분석자료: 건강보험공단의 DB

○ 2008. 7. 1. 시점 DB중 주민번호상의 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향후 '노인'으로 지칭)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

□ 분석대상

- 연령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상자중 data cleaning 작업을 통하여 정리된 최종 사례 5,922,263명 (이중 가구ID가 명확하지 않은 7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분석대상은 총 5,922,188명)
 - 노인: 5,168,298명 (87.3%)
 - 비노인(노인의 배우자): 753,890명 (12.7%)
- 가구단위: 4,178,946 가구
 - 독신노인가구(법적 무배우 상태): 2,613,789(62.5%)
 - 유배우노인가구(법률혼 상태): 1,565,157(37.5%)

□ 노인의 기본특성 검토

- 전체 노인수: 5,168,298명
 - ※ 인구추계(연앙인구)에 의한 '08년도 65세 이상 인구 5,016,026명의 103% 규모임.
 - ※ 2005년도 현재 65세 이상 사망자수 162,853명
- 연령분포: 59.0%인 3,047,255명이 70세 이상으로 1단계 적용 대상임.
 - ※ 인구추계에 의한 '08년도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63.8%가 70세 이상.

<연령별 노인인구분포 및 규모>

	2008년도 연	<u>l</u> 구추계자료	건보공	·단자료
	비율	명	비율	명
65세 이상 70세 미만	36.2	1,816,622	41.0	2,121,043
70세 이상	63.8 3,199,404		59.0	3,047,255
전체	100.0	5,016,026	100.0	5,168,298

○ 성별 구성: 59.5%가 여성노인임.

※ 인구추계에 의한 '08년도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59.5%가 여성.

<성별 노인인구분포 및 규모>

 성별	2008년도 인]구추계자료	건보공	단자료
^8일	비율	명	비율	명
남자	40.5	2,032,180	40.5	2,098,062
여자	59.5	2,983,846	59.5	3,076,236
 전체	100.0	5,016,026	100.0	5,168,298

○ 시도별 노인인구 분포 및 규모

- 노인의 17.5%가 서울, 17.8%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노인의 약 1/3이 수도권에 거주
- 수도권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하여 낮으나 노인인구의 규모는 큼.

<시도별 노인인구(65세 이상)분포 및 규모>

,) -	200		 사료	건보공	단자료
시도 	비율	명	노인인구비율	비율	명
서울	17.1	856,671	8.5	17.5	906,664
부산	7.2	358,984	10.3	7.2	370,881
대구	4.5	228,051	9.3	4.6	236,773
인천	4.2	210,522	8.0	4.2	217,350
광주	2.3	117,860	8.1	2.3	120,988
대전	2.4	118,643	7.9	2.3	121,190
울산	1.4	67,963	6.3	1.4	70,979
 경기	18.0	904,395	8.0	17.8	922,263
 강원	4.2	210,238	14.4	4.1	214,432
충북	3.9	194,161	13.1	3.8	197,133
충남	5.8	292,671	15.1	5.8	300,485
 전북	5.5	274,012	15.7	5.4	281,073
전남	6.8	343,535	19.3	6.8	351,673
경북	8.1	408,736	15.6	8.0	415,407
 경남	7.3	366,504	11.7	7.3	375,717
 제주	1.3	63,080	11.6	1.3	65,014
전체	100.0	5,016,026	10.3	100.0	5,168,022

주) 건보공단자료 중 시도별 분포에서는 시군구코드가 불분명한 276명을 제외함.

□ 노인가구의 기본 특성

- 노인가구중 62.5%가 배우자가 없는 독신노인가구임.
- 부부 모두 노인인 유배우 노인가구: 575,805 (13.8%)
- 부부 중 1인만 노인인 유배우 노인가구: 989,352(23.7%)

<노인가구의 결혼상태 분포>

	- E	신노인가	7	유배우노인가구	유배우노인가구	_
구분	구분 독신전체 남성 여성		(64세 이하	(65세 이상	계	
			배우자)	배우자)		
비율(%)	62.5	13.0	49.5	13.8	23.7	100.0
(가구수)	(2,613,789)	(545,237)	(2,068,552)	(575,805)	(989,352)	(4,178,946)

○ 노인가구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 독신노인가구로 70세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아 43.3%이며, 다음이 70세 미만의 독신노인가구로 19.2%임.
- 배우자가 비노인인 65~69세 연령군의 노인가구가 11.9%, 배우자가 비노인인 70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1.8%임.
- 부부가 모두 노인인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70세 미만의 노인인 경우 가 10.1%, 65~69세와 70세 이상의 배우자로 구성된 경우가 7.6%, 부부가 모두 70세 이상으로 1단계 대상이 되는 가구가 6.0%임.

<노인가구의 연령구성 분포>

	독신노인가구 유배우노인가구							
구분	65-69세	70세이상	64세이하	64세이하	65-69세	65-69세 &	70세이상	계
	00-09/1	10/11/1/8	&65-69세	&70세이상	2인	70세이상	2인	
비율(%)	19.2	43.3	11.9	1.8	10.1	7.6	6.0	100.0
(가구수)	(804,006)	(1,809,783)	(499,344)	(76,461)	(421,803)	(317,405)	(250,144)	(4,178,946)

□ 소득 및 재산관련 변수

- 기초노령연금의 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항목 중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 DB상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금 등의 공적 소득 자료
 - 개인연금, 임차보증금, 골프장 회원권, 금융재산, 조합원 입주권 및 분

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최근 5년 이내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등 개인의 동의에 기초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소득재산 변수>

	비기 사다	: ત્યાં ગોપ્રો મોળો		건강보험 DB		ען
종류	법성 소득	두 및 재산 범위	제공된 항목	원자료원	기준년도	비고
		세 소득 제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임,어업]소득,기타시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2005년도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71111111		배당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	연금급여액	각 연금기관	현재자료	
	기타소득	개인연금, 산재보험 급여, 보훈급여금	-			
		주택	주택			과세표준액÷0.5=시기표준액
		주택 제외 건축물	건물	_		과세표준액:0.6=시기표준액
			부대시설		2006년도	과세표준액:0.6=시기표준액
		토지	토지			과세표준액:0.6=시기표준액
	일반재산	l I	선박	-		
		선박.항공기	항공기	해당 지자체		
		임차보증금 (전세금)	-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세금
재산		골프장 회원권	-			
게단	금융재산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 액면가액, 상장주식, 해약시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i>-</i>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득환 산액의 대리변수로 활용
	부동산을 취 득 할		_			가존건물평가액+청산금
	수 있는 권리	분양권	-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금액
	최근 5년 타인에게	이내 증여된 재산	-			각 재산의 기준가격 적용

주.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제정안)공청회」자료집(2007.7.12) p.9~10표에 기초하여 비교 음영 표시된 항목은 건보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노인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실태

- □ 노인중 국세청을 통하여 파악되는 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은 6.8%에 불과하며,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비율은 22.7%임.
 - 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평균 액수는 월 132만원 정도임.
 - 보유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0.6%, 사업소득 3.9%, 임대소득 2.6%, 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이 각각 0.1%로
 - 상대적으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보유율이 높음.
 - 연금급여의 경우 보유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39만2천원임.
 - 노인의 41.1%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보유율이 32.1%등으로 노인의 51.3%가 주택 및 토지형태의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 일반재산 보유자의 평균재산가치는 1억8천448만원이며 노인전체의 평균액은 9천466만원임.
 - 노인의 12.3%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자의 자동차 세액은 평균 28만원임.

<노인개인의 소득 및 재산 실태>

1. 소득

 Π

건보자료(국세청)를 통해 파악된 소득									
N=5,168,298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	소득 합계 _월	연금급여액 _공적연금소 득만	
보유비율(%)	0.6	3.9	2.6	0.1	0.1	0.1	6.8	22.7	
평균(보유자)	21,852,274	10,308,552	13,360,087	88,928,861	274,605,957	8,265,889	1,321,178	392,120	
평균(전체)	132,370	404,129	340,730	54,665	137,348	5,964	89,601	88,869	

2. 재산

NI-E 160 2EE	건물		주	택	부대	시설	5	지
N=5,168,355	과세표준	시가표준	과세표준	시가표준	과세표준	시가표준	과세표준	시가표준
<u>보유비율(%)</u>	9.	0	41.0 0.5 32.1		2.1			
평균(보유자)	45,823,082	76,371,804	48,510,821	97,021,641	1,844,011	3,073,352	89,664,729	149,441,215
평균(전체)	4,137,333	6,895,554	19,901,399	39,802,797	8,518	14,196	28,765,377	47,942,295

NI—E 160 2EE	 선	선박		 당기	환산전	자동차세액
N=5,168,355	과세표준	시가표준	과세표준	시가표준	일반재산 시가총액	
보유비율(%)	(0.0	-	-	51.3	12.3
평균(보유자)	7,340,666	7,340,666	-	-	184,484,867	280,939
평균(전체)	918	918	-	-	94,655,760	34,577

□ 노인의 제특성별 소득 및 재산실태를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여자노인에 비하여 소득이 나 재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국세청을 통하여 파악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남자노인의 경우 11.4%이나 여자노인의 경우는 3.7%에 불과함.
 - 연금소득의 경우 남자노인의 36.7%가 보유하고 있으나 여자노인의 경우는 13.1% 수준임.
 - 남자노인의 경우 61.6%가 주택을, 50.3%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일 반재산소유율이 73.2%에 달하는데 비하여 여자노인의 경우는 동비율이 각각 27.0%와 19.7%에 불과하여 일반재산소유율이 36.4%에 불과함.

<성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실태>

1. 소득

(단위: %)

								(= 11. /*)
		건보자료(국세청)를 통해 파악된 소득						
성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소득합계 _월	연금급여액 _공적연금소 득만
남	1.2	6.4	4.4	0.1	0.1	0.1	11.4	36.7
여	0.2	2.3	1.3	0.0	0.0	0.0	3.7	13.1
전체	0.6	3.9	2.6	0.1	0.1	0.1	6.8	22.7

2. 재산

성별	건물 (시가표준)	주택 (시가표준)	부대시설 (시가표준)	토지 (시가표준)
남	15.1	61.6	0.8	50.3
여	4.9	27.0	0.2	19.7
 전체	9.0	41.0	0.5	32.1

성별	선박 (시가표준)	항공기 (시가표준)	일반재산 보유율	자동차세액_연간 (자동차환산액 대리변수)
	0.0	-	73.2	24.5
여	0.0	-	36.4	4.0
전체	0.0	-	51.3	12.3

- 연령군별로는 대체적으로 70세 미만의 경우가 각 소득 및 재산 항목별 보유율이 높음.
 - 70세 미만의 경우 9.6%가 국세청을 통해 파악된 소득이 있는 반면 70세 이상은 4.8%에 불과함.
 - 70세 미만의 경우 38.0%가 연금소득이 있는데 반하여 70세 이상은 12.0%로 26%포인트의 차이를 보임.
 - 70세 미만의 경우 56.7%가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하여 70세 이 상은 47.6%임.

<연령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실태>

1. 소득

(단위: %)

	건보자료(국세청)를 통해 파악된 소득							
연령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	소득합계 _월	연금급여액 _공적연금소 득만
65-69세	0.9	6.1	3.1	0.1	0.1	0.1	9.6	38.0
70세 이상	0.4	2.4	2.1	0.1	0.0	0.0	4.8	12.0
전체	0.6	3.9	2.6	0.1	0.1	0.1	6.8	22.7

2. 재산

 연령	건물	주택	부대시설	토지
26	(시가표준)	(시가표준)	(시가표준)	(시가표준)
65-69세	11.3	46.44	0.6	34.8
70세 이상	7.5	37.3	0.3	30.2
전체	9.0	41.0	0.5	32.1

연령	선박 (시가표준)	항공기 (시가표준)	환산전 일반재산 시가 총 액	자동차세액_연간 (자동차환산액 대리변수)
65-69세	0.0	-	56.7	7.9
70세 이상	0.0	-	47.6	18.6
전체	0.0	-	51.3	12.3

○ 시도별로는 살펴보면

-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보유율이 서울이 1.4%로 가장 높고 충남, 전남, 경북이 각각 0.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은 상당 규모되지만 국세청을 통하여 소득이 잡힐 정도의 내용이나 규모가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사업이나 임대소득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득보유율이 낮지만 시도간 차이는 분명함.
 - 사업소득의 경우도 서울이나 부산은 5%이상이지만 전남, 전북, 충남 북도는 모두 3%미만임.
 - 임대소득의 경우도 서울의 경우 5.2%로 월등이 높고 전남은 0.7%로 시도간의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연금소득의 경우 인천이 17.9%로 가장 낮고 전남과 제주도가 가장 높은 27.9% 수준을 보임.
 - 타 소득항목에 비하여 연금소득의 경우 도지역의 보유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은 특례노령연금의 가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시도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실태>

1. 소득

								(= 11. 70)
		,	건보자료(국서	청)를 통해	파악된 소득			월
시도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월 소득합계	절 연금급여액
서울	1.4	5.7	5.2	0.2	0.2	0.2	11.5	21.4
부산	0.6	5.1	2.8	0.1	0.1	0.1	8.2	20.7
대구	0.5	4.1	2.6	0.1	0.0	0.1	6.7	22.7
인천	0.6	3.6	2.3	0.0	0.0	0.0	6.2	17.9
광주	0.5	4.1	2.4	0.0	0.0	0.1	6.7	24.8
대전	0.5	4.2	3.0	0.0	0.0	0.1	7.4	21.8
 울산	0.4	3.5	2.6	0.0	0.0	0.0	6.3	21.0
경기	0.8	3.6	3.0	0.1	0.0	0.1	7.1	20.4
강원	0.3	4.0	1.5	0.0	0.0	0.0	5.8	23.0
충북	0.3	2.9	1.9	0.0	0.0	0.0	5.0	22.1
충남	0.2	2.9	1.3	0.0	0.0	0.0	4.4	22.0
전북	0.3	2.8	1.2	0.0	0.0	0.0	4.2	26.1
전남	0.2	2.7	0.7	0.0	0.0	0.0	3.6	27.9
경북	0.2	2.9	1.0	0.0	0.0	0.0	4.0	26.5
경남	0.3	3.7	1.3	0.0	0.0	0.0	5.1	23.9
제주	0.4	4.0	2.0	0.0	0.0	0.0	6.1	27.9
전체	0.6	3.9	2.6	0.1	0.1	0.1	6.8	22.7

2. 재산

лгн	건물	주택	부대시설	토지
시도별	(시가표준)	(시가표준)	(시가표준)	(시가표준)
 서울	10.3	40.0	1.4	23.1
 부산	8.8	40.3	0.4	22.1
대구	9.8	39.0	0.3	26.5
인천	8.0	38.5	0.4	21.4
광주	7.8	41.4	0.4	32.3
 대전	8.4	40.0	0.5	25.9
<u>울</u> 산	8.9	38.2	0.1	30.8
 경기	8.9	37.6	0.4	25.4
강원	9.3	36.1	0.1	32.3
충북	9.0	40.6	0.1	36.4
충남	8.2	44.9	0.2	43.2
전북	7.3	43.9	0.1	44.3
전남	8.2	47.1	0.1	50.2
경북	8.1	44.6	0.1	43.6
경남	8.9	44.7	0.2	40.1
-i) 7		27.5	0.1	41.0
제수	20.2	37.5	0.1	41.0
제주 전체	9.0	41.0	0.5	32.1
전체 시도별 서울	9.0	41.0	0.5	32.1
전체 시도별	9.0 선박 보유율	41.0	0.5 일반재산보유율	32.1 자동차보유율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9.0 선박 보유율 0.0	41.0 항공기보유율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32.1 자동차보유율 13.1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9.0 선박 보유율 0.0 0.0	41.0 항공기보유율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41.0 항공기보유율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41.0 항공기보유율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41.0 항공기보유율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81.0 항공기보유율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7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0.0	41.0 항공기보유율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48.7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7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0.0 0.0	81.0 항공기보유율 - -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48.7 47.2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7 15.6 13.8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0.0 0.0	81.0 항공기보유율 - - -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48.7 47.2 48.1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7 15.6 13.8 12.9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81.0 항공기보유율 - - -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48.7 47.2 48.1 51.8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7 15.6 13.8 12.9 11.3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81.0 항공기보유율 - - - -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48.7 47.2 48.1 51.8 56.6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7 15.6 13.8 12.9 11.3 10.1
전체 시도 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41.0 항공기보유율 - - - - -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48.7 47.2 48.1 51.8 56.6 58.6 61.2 56.6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7 15.6 13.8 12.9 11.3 10.1 11.8 8.6 11.2
전체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북 건당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8 3 3 기보유율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48.7 47.2 48.1 51.8 56.6 58.6 61.2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6 13.8 12.9 11.3 10.1 11.8 8.6
전체 시도 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9.0 선박 보유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81.0 항공기보유율 - - - - - - - - - - - - -	0.5 일반재산보유율 48.0 47.6 48.0 46.6 52.4 48.6 48.7 47.2 48.1 51.8 56.6 58.6 61.2 56.6	32.1 자동차보유율 13.1 11.1 15.7 11.3 14.5 15.7 15.6 13.8 12.9 11.3 10.1 11.8 8.6 11.2

- □ 노인가구의 8.9%가 일반소득을 28.3%가 연금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총 33.1%의 가구가 소득이 있음.
 - 가구소득이 있는 노인가구의 평균소득평가액은 70만원이며, 노인가구 전체의 소득평가액은 평균 23만3천원임.
 - 일반재산의 가구보율은 60.4%로 보유가구의 평균 재산시가총액은 2억

618만원이며, 노인가구 전체의 평균은 1억2천455만원임.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가구의 경우 월 82만7천원, 가구전체로는 52 만3천원 수준임.
-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노인가구는 67.9%이며 소득인정액 평균은 노 인가구 전체의 경우, 75만6천원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실태>

1. 소득

N=4,178,946	국세청을 통해 파악된 월총소득합계	월 연금소득	소득평가액
보유비율(%)	8.9%	28.3	33.1
평균(보유가구)	1,335,590	403,332	703,548
평균(전체)	118,613	114,337	232,650

2. 재산

N=4 170 046	일반재산 환산전	자동차가액 환산액	재산의 소	-득환산액	人도이저해	
N=4,178,946	시가총액	사공사가락 완신락	연간	월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60.4	16.2	63.2		67.9	
평균(보유가구)	206,184,041	287,209	9,922,501	826,875	1,113,022	
평균(전체)	124,549,450	46,402	6,273,875	522,823	755,773	

□ 노인가구의 특성별로

- 독신노인가구의 경우 국세청을 통해 파악된 소득이 있는 가구가 8.9%, 연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28.3%로 어떠한 형태이던간에 소득이 있는 가 구가 33.1%임.
 - 국세청을 통해 파악된 소득이 있는 비율은 비노인 배우자를 둔 노인부부가구로 21.5%이며, 연금의 경우도 62.6%로 독신노인가구의 17.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 소득보유가구의 비율은 비노인 배우자를 둔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높은 69.8%이며, 다음이 배우자도 노인인 노인부부가구로 46.1%, 독신노인 가구 29.1%의 순임.
- 재산 보유율 또한 독신노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간의 차이가 커, 일반재 산, 자동차의 경우 모두 보유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재산 실태>

	국세청을 통해 파악된 소득 보유율	연금소득 보유율	소득 보유율	일반재산보 유율	자동차 보유율	재산 보유율
독신노인가구	4.3	17.1	29.1	45.4	7.5	48.2
64세 이하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	21.5	62.6	69.8	86.7	42.0	90.5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	13.7	38.0	46.1	84.7	24.0	87.1
전체노인가구	8.9	28.3	33.1	60.4	16.2	63.2

- □ 소득 및 재산의 소유유형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33.1%가 소득이 전혀 없으며 재산이 없는 가구는 4.7%임.
 -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는 32.1%로 노인가구의 약 1/3에 달하고 있음.
 - 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4.7%에 불과한 반면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있는 노인가구는 34.8%임.
 -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갖고 있는 노인가구는 23.4%임.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재산 보유유형>

		자	산	전체	
		유	무	[선세 	
소득	유	1,188,355 (28.4)	195,326 (4.7)	1,383,681 (33.1)	
25	무	1,453,941 (34.8)	1,341,324 (32.1)	2,795,265 (66.9)	
	체	2,642,296 (63.2)	1,536,650 (36.8)	4,178,946 (100.0)	

- □ 소득 및 재산의 소유유형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독신노인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아 46.3%에 달하고 있음.
 - 반면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재산만 있는 가구가 43.9%,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비율이 43.2%로 비슷한 구성비를 보임.
 - 비노인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의 경우 재산만 있는 비율은 24.7%인 반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비율이 65.8%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 재산 보유유형>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 모두 없음	소득만 있음	재산만 있음	소득과 재산 모두 있음
독신 노인가구	46.3	5.5	33.6	14.6
64세 이하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	5.5	4.0	24.7	65.8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	10.0	2.9	43.9	43.2
전체	32.1	4.7	34.8	28.4

제특성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

- □ 제시된 소득인정액(금융소득을 일괄합산하기 전 기준: 독신노인 36만원, 유 배우노인 57만6천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개인의 특성과 가구특성을 살펴봄.
- □ 노인개인의 특성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비율

Ш

○ 성별로는 여자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이 74.2% 로 남자노인의 60.7%보다 월등히 높음.

<노인의 성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

성별	노인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
남자	1,822,492	60.7%
여자	3,345,806	74.2%
전체	5,168,298	69.4%

○ 노인의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으로 1단계 대상인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이 76.5%인 반면, 2단계 적용대상자의 경우는 59.1%로 연령군별 수급율의 차이가 매우 큼.

<노인의 연령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

성별	노인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
70세 미만	2,121,043	59.1%
70세 이상	3,047,255	76.5%
 전체	5,168,298	69.4%

○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이 가장 낮아 54.9%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84.7%에 달하여 약 30%포인트 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

 시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의 비율
서울	54.9%
부산	74.0%
대구	69.8%
인천	71.3%
	71.5%
대전	66.7%
울산	71.2%
경기	62.2%
강원	75.0%
충북	74.9%
충남	70.4%
전북	79.8%
전남	84.7%
경북	79.2%
경남	77.4%
제주	63.1%
전체	69.4%

□ 노인가구의 경우 독신노인가구의 경우는 81.4%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이며, 부부가 모두 노인인 경우는 59.3%, 배우자가 비노인인 노인가구는 49.5%로 가구유형별 차이가 매우 큼.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비율>

 가구유형별	노인가구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비율
독신 노인가구	2,613,789	81.4%
64세 이하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	575,805	49.5%
65세 이상의 배우자를 둔 노인가구	989,352	59.3%
전체	4,178,946	71.8%

<사례 도출을 지역유형별 노인의 소득 및 재산실태 파악>

다양한 사례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

□ 지역별 차이

-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고령화율 및 시군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군구를 분류할 수 있음.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분포 현황>

(단위: 개)

고령화율	14%미만	14-20%미만	20-30%미만	30%이상	기초자치 단체수
도시지역	유형 I (94)				94
도농복합지역	유형Ⅱ(36)	유형Ⅲ(16)			52
농어촌지역		유형IV(31)	유형 V (43)	유형VI(14)	88
소계	129	42	49	14	234

주: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임.

자료: 정경희 외, 『고령화 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6.

- □ 건보자료상의 변수 중 고려해야할 변수
 - 가구 특성
 - 배우자 유무(65세 이상 여부 구분)
 - 연령구성
 - 소득/재산 실태
- □ 건보자료에는 없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
 - 사적이전 소득 유무('04 자료 원용)
 - 노인의 78.9%가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으며 평균 사적이전소득의 규모는 17만6천원임.
 - 자녀와의 동거 여부 고려('04 자료 원용)
 - 노인의 38.6%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음.
 - 자녀동거율에는 지역별 차이가 큼.

<지역유형별 거주형태 및 경제상황의 차이>

	도시지역	도농복	합지역		농어촌지역	
	유형 I	유형Ⅱ	유형Ⅲ	유형IV	유형V	유형VI
	고령화율	고령화율	고령화율	고령화율	고령화율	고령화율
제특성	14% 미만	14% 미만	14~20%미만	14~20%미만	20~30%미만	30% 이상
				、		
	(도시형)	(도시권	(농어촌권	(중소도시근교	(일반	(최고령
		중소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농어촌형)	농어촌형)
독거노인비율(%)	17.7	16.6	35.2	26.6	16.0	28.4
자녀동거율(%)	45.4	41.3	22.2	29.0	34.3	20.6
월평균가구소득(만원)	54.8	48.1	35.1	38.8	45.0	34.0
노인취업율(%)	18.5	29.7	28.0	50.9	49.3	54.9
기초보장대상 비율	7.9	8.5	11.6	11.1	11.9	11.3
경로연금	10.1	13.9	21.8	20.1	26.1	25.7

자료: 정경희 외, 『고령화 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기타 관심사

- 현재 공공부조(경로연금, 기초보장수급) 대상자 여부
- 일자리 사업 참여
- 농업소득의 고려 여부
- 금융소득 ('04 자료 원용)
 - 노인의 4.5%가 금융소득이 있으며 가구소득수준별 차이가 있음.
 -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의 경우 2.1%, 50~100만원 미만 4.9%, 100~ 200만원 미만
- 사실혼의 인정여부
- 거주지 이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므로 영향 없음
- 연령별
 - 1단계 시작시 적용대상이 되는 연령 (37. 12.31 이전 출생자)
 - 1단계 시작 시는 적용대상이 아니나 2단계 시작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즉 1단계 시작시 만 70세가 아니었으나 그 이후 70세가 된 노인층

(38.1.1~ 38. 6.30 출생자)

- 2단계 시작시부터 2008년 12. 31.기간중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연령층 (38. 7.1~43. 12.31 출생자)

Ⅱ │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 주민등록기준으로 각 시군구의 노인비율을 살펴보면 남해군이 28.3%로 가장 높으며 울산시 동구가 4.0%으로 제일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시군 구별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큼.

<시군구별 노인인구 비율>

 시도	시군구명	전체인구 ¹⁾	65세이상인구 ¹⁾	노인인구비율 ¹⁾	노인중 수급자 비율 ²⁾
 전국		48,991,779	4,556,733	9.3	69.4
	종로구	166,793	17,808	10.7	50.7
	중구	130,649	13,671	10.5	58.2
	용산구	232,035	24,130	10.4	49.3
	성동구	334,437	27,253	8.1	53.3
	광진구	374,442	24,705	6.6	50.6
	동대문구	378,860	34,199	9.0	53.9
	중랑구	426,078	31,919	7.5	59.3
	성북구	472,843	41,573	8.8	55.2
	강북구	348,990	31,728	9.1	63.1
	도봉구	377,534	30,206	8.0	59.6
	노원구	618,093	47,289	7.7	65.7
	은평구	464,580	40,045	8.6	62.8
서울시	서대문구	349,020	33,364	9.6	55.9
12 1	마포구	390,583	33,265	8.5	52.1
	양천구	501,717	31,463	6.3	58.6
	강서구	554,945	38,488	6.9	64.2
	구로구	419,832	29,126	6.9	55.4
	금천구	253,243	18,131	7.2	60.1
	영등포구	408,698	32,909	8.1	47.5
	동작구	408,582	33,929	8.3	50.7
	관악구	535,217	38,006	7.1	55.9
	서초구	408,266	26,994	6.6	37.2
	강남구	556,964	34,112	6.1	41.3
	송파구	607,005	37,434	6.2	48.9
	강동구	461,760	29,153	6.3	54.6
	중구	50,766	6,428	12.7	73.8
	서구	136,226	16,642	12.2	78.7
	동구	106,890	14,170	13.3	80.6
	영도구	158,780	17,945	11.3	81.7
	부산진구	405,775	38,461	9.5	73.3
부산시	동래구	279,528	23,463	8.4	68.0
1 2 1	남구	297,893	26,725	9.0	73.6
	북구	330,446	22,629	6.8	79.6
	해운대구	418,875	33,457	8.0	72.4
	사하구	366,865	27,578	7.5	79.1
	금정구	263,338	23,446	8.9	70.9

시도	시군구명	전체인구 ¹⁾	65세이상인구 ¹⁾	노인인구비율1)	노인중 수급자 비율 ²⁾
	강서구	53,169	7,399	13.9	59.2
	연제구	214,809	18,851	8.8	69.6
	수영구	177,814	17,316	9.7	64.6
	사상구	271,484	17,928	6.6	79.5
	기장군	79,334	9,581	12.1	72.4
	중구	78,615	10,533	13.4	68.1
대구시	동구	337,902	33,418	9.9	73.2
	서구	243,560	20,466	8.4	77.2
	남구	180,481	20,032	11.1	69.0
	북구	468,030	32,800	7.0	74.3
	수성구	440,172	36,828	8.4	60.4
	달서구	589,041	37,457	6.4	70.2
	달성군	158,314	14,624	9.2	65.9
	중구	91,916	9,265	10.1	67.3
등 남- 연 임천시 남- 계 계 서- 강:	동구	75,699	8,448	11.2	79.2
	남구	416,672	35,317	8.5	70.9
	연수구	271,010	16,069	5.9	68.8
	남동구	390,044	25,718	6.6	74.1
	부평구	570,283	38,381	6.7	70.5
	계양구	342,335	18,265	5.3	76.8
		384,431	21,767	5.7	75.6
		·		20.8	54.9
	강화군	65,510	13,628		
	옹진군	16,491	3,082	18.7	73.4
	동구	114,086	13,407	11.8	65.6
키고 시	서구	309,362	21,319	6.9	69.6
광우시	남구	211,744	19,159	9.0	71.6
	북구	460,985	32,892	7.1	71.7
광주시 및	광산구	311,621	19,025	6.1	77.2
	동구	236,504	22,592	9.6	72.8
2) -1 -1	중구	263,592	24,091	9.1	65.5
대전시	서구	505,600	30,790	6.1	62.8
	유성구	243,130	13,947	5.7	61.1
	대덕구	217,332	14,296	6.6	72.4
	중구	234,896	14,164	6.0	73.0
A .3 .3	남구	345,769	16,045	4.6	70.8
울산시	동구	185,954	7,478	4.0	78.9
	북구	148,772	7,245	4.9	71.5
	울주군	177,103	16,487	9.3	66.1
	수원시	1,068,906	61,223	5.7	64.9
	성남시	964,831	67,126	7.0	55.5
	의정부시	410,938	31,948	7.8	70.4
	안양시	624,280	40,533	6.5	59.4
	부천시	860,020	52,084	6.1	70.2
경기도	광명시	313,372	22,114	7.1	64.6
	평택시	396,765	34,514	8.7	62.2
	동두천시	85,803	9,305	10.8	79.1
	안산시	698,819	36,896	5.3	70.5
	고양시	910,206	69,964	7.7	56.1

시도	시군구명	전체인구 ¹⁾	65세이상인구 ¹⁾	노인인구비율1)	노인중 수급자 비율 ²⁾
	과천시	60,482	5,016	8.3	44.9
	구리시	193,847	12,676	6.5	63.1
	남양주시	470,617	37,334	7.9	68.2
	오산시	136,311	7,263	5.3	65.2
	시흥시	390,477	20,400	5.2	73.0
	군포시	274,569	18,058	6.6	59.3
	의왕시	138,253	9,824	7.1	62.6
	하남시	134,824	10,362	7.7	59.2
	용인시	766,569	55,440	7.2	49.0
	파주시	292,752	29,869	10.2	61.5
	이천시	194,369	17,639	9.1	65.0
	안성시	159,655	18,484	11.6	63.7
	김포시	207,824	18,278	8.8	55.1
	화성시	310,171	26,951	8.7	55.4
	광주시	222,048	17,093	7.7	60.9
	양주시	169,806	14,532	8.6	67.4
	포천시	157,269	17,300	11.0	67.4
	여주군	105,022	14,101	13.4	66.8
	연천군	46,075	7,602	16.5	67.1
	가평군	54,855	9,067	16.5	69.2
	양평군	86,298	14,586	16.9	61.1
		256,239	29,209	11.4	66.3
춘천시 원주시		-	29,415	10.0	70.7
		294,155		11.8	
	강릉시	222,016	26,270		74.7
	동해시	97,497	10,444	10.7	81.9
	태백시	51,593	5,880	11.4	88.7
	속초시	86,073	8,918	10.4	78.0
	삼척시	71,750	11,273	15.7	86.2
	홍천군	70,037	11,678	16.7	71.7
강원도	횡성군	42,982	8,406	19.6	74.0
• -	영월군	40,511	7,759	19.2	84.5
	평창군	44,332	7,498	16.9	74.0
	정선군	43,186	6,705	15.5	82.3
	철원군	48,024	6,572	13.7	69.5
	화천군	23,317	3,766	16.2	80.3
	양구군	21,269	3,222	15.1	81.2
	인제군	32,493	4,530	13.9	77.8
	고성군	31,285	5,440	17.4	77.0
	양양군	28,661	5,027	17.5	72.5
	청주시	626,679	43,149	6.9	68.8
	충주시	204,610	25,851	12.6	75.6
	제천시	136,398	17,263	12.7	79.4
	청원군	136,538	19,101	14.0	67.5
충청북도	보은군	36,293	8,780	24.2	81.4
0 071	옥천군	54,923	10,401	18.9	83.0
	영동군	50,819	10,883	21.4	83.0
	진천군	60,111	8,498	14.1	70.2
	괴산군	37,570	9,495	25.3	72.8

 시도	시군구명	전체인구 ¹⁾	65세이상인구 ¹⁾	노인인구비율 ¹⁾	노인중 수급자 비율 ²⁾
	음성군	86,789	12,533	14.4	81.7
	단양군	33,346	6,353	19.1	73.6
	증평군	30,483	3,607	11.8	85.9
	천안시	523,323	36,842	7.0	68.8
	공주시	128,330	20,399	15.9	66.9
	보령시	107,591	17,045	15.8	76.5
충청남도	아산시	211,560	22,994	10.9	65.0
	서산시	150,889	19,773	13.1	67.5
	논산시	131,466	22,291	17.0	74.1
	계룡시	36,846	2,390	6.5	70.8
	금산군	57,552	11,779	20.5	78.1
	연기군	-		15.1	64.0
	부여군	82,747	12,494		
	서천군	79,595	17,483	22.0	76.8 79.2
		62,629	14,388	23.0	
	청양군	34,086	8,686	25.5	77.6
	홍성군	89,555	16,339	18.2	76.4
	예산군	89,585	17,346	19.4	69.5
	태안군	63,754	11,457	18.0	66.7
	당진군	124,925	19,640	15.7	59.9
	전주시	624,849	51,244	8.2	70.7
	군산시	260,989	28,484	10.9	79.5
	익산시	315,094	34,670	11.0	79.4
	정읍시	126,249	22,866	18.1	83.8
	남원시	91,265	16,670	18.3	82.2
	김제시	100,238	20,535	20.5	80.9
전라북도	완주군	83,199	13,620	16.4	78.8
건무구그	진안군	27,122	6,897	25.4	87.0
	무주군	25,417	6,216	24.5	82.2
	장수군	24,209	5,980	24.7	87.2
	임실군	31,976	8,370	26.2	85.6
	순창군	32,485	8,097	24.9	87.2
	고창군	62,030	14,674	23.7	88.0
	부안군	63,243	13,706	21.7	82.1
	목포시	241,679	20,256	8.4	83.0
	여수시	297,489	31,702	10.7	84.8
	순천시	269,940	27,660	10.2	78.1
	나주시	96,417	19,786	20.5	81.9
	광양시	138,237	12,025	8.7	78.3
	담양군	50,332	10,660	21.2	77.8
	곡성군	33,631	8,783	26.1	86.3
2) 2) 1 1 1	구례군	28,837	6,865	23.8	86.2
전라남도	고흥군	81,068	22,534	27.8	92.6
	보성군	51,948	13,741	26.5	86.8
	화순군	72,615	12,676	17.5	81.7
	장흥군	44,451	11,277	25.4	87.8
	강진군	41,938	10,360	24.7	85.8
	해남군	84,338	18,474	21.9	84.7
	영암군	61,546	11,633	18.9	79.5

시도	시군구명	전체인구 ¹⁾	65세이상인구 ¹⁾	노인인구비율1)	노인중 수급자 비율 ²⁾
	무안군	61,766	12,367	20.0	80.0
	함평군	38,647	10,066	26.0	86.5
	영광군	60,045	11,955	19.9	88.6
	장성군	47,870	10,307	21.5	82.2
	완도군	57,464	12,993	22.6	95.1
	진도군	35,953	8,877	24.7	92.2
	신안군	46,714	11,929	25.5	89.3
	포항시	505,008	42,360	8.4	77.1
	경주시	273,419	36,248	13.3	74.0
경상북도	김천시	139,682	22,270	15.9	75.1
	안동시	168,733	27,030	16.0	82.7
	구미시	386,465	21,226	5.5	73.9
	영주시	116,965	18,842	16.1	81.3
	영천시	105,029	19,334	18.4	78.7
	상주시	108,280	23,300	21.5	82.3
	문경시	76,177	15,196	19.9	84.3
	경산시	234,839	23,207	9.9	71.0
	군위군	26,687	7,398	27.7	81.5
	의성군	62,947	17,279	27.5	84.5
	청송군	28,465	6,962	24.5	89.8
	영양군	19,615	5,154	26.3	90.8
	영덕군	46,460	10,973	23.6	89.2
	청도군	46,144	11,682	25.3	74.9
	고령군	34,777	7,210	20.7	71.7
	성주군	46,358	9,967	21.5	72.8
	칠곡군	111,390	11,527	10.3	70.8
	예천군	50,218	13,172	26.2	86.7
	봉화군	35,608	9,036	25.4	90.5
	울진군	55,076	11,287	20.5	88.3
	울릉군	10,235	1,694	16.6	84.8
	창원시	503,881	24,813	4.9	67.3
	마산시	421,783	35,569	8.4	73.3
	진주시	333,554	33,437	10.0	72.9
	진해시	161,175	13,978	8.7	69.6
	통영시	133,127	14,335	10.8	85.3
	사천시	112,300	15,851	14.1	77.4
	김해시	453,728	28,812	6.4	74.3
	밀양시	112,025	19,229	17.2	71.7
경상남도	거제시	201,412	14,496	7.2	79.6
339E	양산시	226,425	17,019	7.5	77.0
	의령군	31,625	8,844	28.0	88.2
	함안군	63,460	11,094	17.5	73.1
	창녕군	63,476	13,931	21.9	83.2
	고성군	55,309	12,040	21.8	80.8
	남해군	50,792	14,359	28.3	89.3
	하동군	52,898	12,331	23.3	82.8
	산청군	35,704	9,542	26.7	82.5
	함양군	41,162	10,373	25.2	83.7

시도	시군구명	전체인구 ¹⁾	65세이상인구 ¹⁾	노인인구비율 ¹⁾	노인중 수급자 비율 ²⁾
	거창군	63,917	12,984	20.3	83.3
	합천군	55,104	14,894	27.0	87.7
제주도	제주시	558,496	58,685	10.5	63.1

주: 1) 자료: 주민등록인구

2) 자료: 건보DB에 기초한 분석결과

□ 지역유형별 시군구 분포

- 주민등록상의 인구 기준으로 할 경우 도시지역에 속하는 시군구는 101개,
 - 도농복합지역으로 고령화율이 14%미만인 지역이 28개, 도농복합지역으로 고령화율이 14%이상인 지역이 16개,
 - 고령화율이 20%미만인 농어촌지역이 37개, 고령화율이 20%이상이 농 어촌지역이 49개임.

<지역유형별 시군구 분포>

도시지역(101개)		고령화율 14% 미만의 도농복합지역 (28개)	고령화율 14% 이상의 도농복합지역 (16개)	고령화율 20% 미만의 농어촌지역 (37개)	20% 농어]화율 이상의 촌지역 9개)	
<서울시>	금정구	<경기도>	<경기도>	<강원도>삼척시	<부산> 기장군	<경기도>	<경북> 군위군
종로구	강서구	수원시	평택시	<충남> 공주시	<대구> 달성군	강화군	의성군
중구	연제구	성남시	남양주시	보령시	<인천> 옹진군	<충북> 보은군	청송군
용산구	수영구	의정부시	용인시	논산시	<울산> 울주군	영동군	영양군
성동구	사상구	안양시	<강원도> 춘천시	<전북> 정읍시	<경기도>여주군	괴산군	영덕군
광진구	<대구시> 중구	부천시	원주시	남원시	연천군	<충남> 금산군	청도군
동대문구	동구	광명시	강릉시	김제시	가평군	부여군	고령군
중랑구	서구	동두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나주시	양평군	서천군	성주군
성북구	남구	안산시	제천시	<경북> 김천시	<강원도> 홍천군	청양군	예천군
	북구	고양시	<충남> 천안시	안동시	횡성군	<전북> 진안군	봉화군
도봉구	수성구	과천시	아산시	영주시	영월군	무주군	울진군
노원구	달서구	구리시	서산시	영천시	평창군	장수군	의령군
은평구	<인천시> 중구	오산시	계룡시	상주시	정선군	임실군	창녕군
서대문구	동구	시흥시	<전북> 군산시	문경시	철원군	순창군	<경남> 고성군
마포구	남구	군포시	익산시	<경남>사천시	화천군	고창군	남해군
양천구	연수구	의왕시	<전남> 여수시	밀양시	양구군	부안군	하동군
강서구	남동구	하남시	순천시		인제군	<전남> 담양군	산청군

도시지역(101개)		고령화율 14% 미만의 도농복합지역 (28개)	고령화율 14% 이상의 도농복합지역 (16개)	고령화율 20% 미만의 농어촌지역 (37개)	고령 20% 농어 (49	화율 이상의 존지역 '개)	
구로구	부평구	파주시	광양시		고성군	곡성군	함양군
금천구	계양구	이천시	<경북> 포항시		양양군	구례군	거창군
영등포구	서구	안성시	경주시		<충북> 청원군	고흥군	합천군
동작구	<광주시> 동구	김포시	구미시		옥천군	보성군	
관악구	서구	화성시	경산시		진천군	장흥군	
서초구	남구	광주시	<경남> 창원시		음성군	강진군	
강남구	북구	양주시	마산시		단양군	해남군	
송파구	광산구	포천시	진주시		증평군	무안군	
강동구	<대전시> 동구	<강원도> 동해시	통영시		<충남> 연기군	함평군	
<부산시>	중구	태백시	김해시		홍성군	장성군	
중구	서구	속초시	거제시		예산군	완도군	
서구	유성구	<충북> 청주시	양산시		태안군	진도군	
동구	대덕구	<전부> 전주시			당진군	신안군	
영도구	<울산시> 중구	<전남> 목포시			<전북> 완주군		
부산진구	남구	<경남> 진해시			<전남> 화순군		
동래구	동구				영암군		
남구	북구				영광군		
북구					<경북> 칠곡군		
해운대구					울릉군		
사하구					<경남> 함안군		

주: 주민등록상의 자료로는 아직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시군구가 없음.

${ m I\hspace{-.1em}I}$

지역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의 제특성

- □ 시군구별 수급율(노인개인단위)
 - 지역별 수급대상자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 완도군의 경우 노인의 대부분인 95.1%가 수급대상자이며, 5개(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진 도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시군구가 90%을 넘고 있음.
 - 80%가 넘는 시군구는 총 65개로 전체 시군구의 28%임.

- 반면, 5개 시군구는 대상자가 50% 이만으로 서초구가 가장 그 비율이 낮아 37.2%임.

□ 지역유형별 노인의 제특성

- 지역유형별로 노인의 제특성을 살펴보면, 노인 중 1단계 지급대상인 70 세 이상의 비율이 도시지역이 56.9%인데 비하여 고령화율 14% 이상의 도농복합지역과 20%이상의 농어촌지역은 63%를 넘고 있음.
- 노인중 여자의 비율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노인의 비율은 도시지역이 65.9%인데 비하여 도농복합지역은 73.9%와 78.3%이며,
 - 농어촌지역은 고령사회단계인 지역은 73.6%, 초고령지역인 곳은 82.5%로 지역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지역유형별 가구의 제특성

- 노인가구중 독신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유형별 차이가 있으나 그 리 크지 않음.
- □ 지역유형별 소득 및 재산소유유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나 고령화율 14%미만의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노인가구의 비율이 40%를 넘고 있는 반면 고령화율 20%이상의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31.9%에 불과함.
 - 이는 고령화율 20%이상의 농어촌지역의 경우 재산소유율이 높기 때문 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우 소득은 없으나 재산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편임.

<지역유형별 노인개인 및 노인가구의 제특성>

제특성	도시지역	고령화율 14% 미만의 도농복합 지역	고령화율 14% 이상의 도농복합 지역	고령화율 20% 미만의 농어촌지역	고령화율 20% 이상의 농어촌지역
	101개 시군구	28개 시군구	16개 시군구	37개 시군구	49개 시군구
<노인 개인의 제특성>					
노인 중 70세 이상의 비율	56.9	60.5	63.1	61.4	63.6
노인중 여자의 비율	59.0	60.8	60.5	59.1	59.6
노인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 하의 비율	65.9	73.9	78.3	73.6	82.5
<노인가구의 제특성>					

제특성	도시지역	고령화율 14% 미만의 도농복합 지역	고령화율 14% 이상의 도농복합 지역	고령화율 20% 미만의 농어촌지역	고령화율 20% 이상의 농어촌지역
	101개 시군구	28개 시군구	16개 시군구	37개 시군구	49개 시군구
1. 일반특성					
가구유형					
독신 노인가구	62.7	64.3	63.4	61.0	67.8
노인부부	37.3	35.6	36.7	39.1	32.2
2. 소득재산실태					
소득.재산유형분포					
소득.재산 모두 없음	42.7	40.2	35.4	38.0	31.9
소득만 있음	5.9	5.4	5.0	5.1	4.7
재산만 있음	31.2	33.9	36.5	35.5	38.4
소득과 재산 모두 있음	20.2	20.5	23.1	21.3	25.1

<노인의 기본특성 및 소득재산실태에 관한 건보자료와 노인관련 조사자료와의 비교>

- □ 건보자료는 노인의 법률상의 결혼상태에 따른 배우자 유무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으로 가구전체의 구성형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의 일대 일 비교는 매우 어려우며 의미가 없음.

- □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무배우 노인 중 44.9%가 독거하고 있으며 47.6%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음.
 - 따라서 건보자료에서 독신노인으로 파악된 경우도 실제 약 1/2은 노인1 인가구가 아니라 자녀 또는 다른 가족과 동거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유배우 노인의 경우 약 2/3가 부부끼리 생활하고 있으며, 31.2%가 자녀와 동거중임.
 - 건보자료상 유배우 상태로 파악된 노인의 약 1/3은 자녀와 동거하 거 있어 실제 가용한 소득·재산 규모는 시뮬레이션보다 월등히 클 것임.

<노인의 결혼상태별 가구유형>

	단독거주	부부만 거주	자녀동거	기타	전체
유배우	0.71)	62.7	31.2	5.4	100.0(1,795)
무배우	44.9	-	47.6	7.6	100.0(1,482)
전체	20.7	34.4	38.6	6.4	100.0(3,277)

주: 1) 유배우 상태이나 개인사정으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경우임.

- □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유배우율은 54.8% 이나, 건보자료에서는 유배우율이 49.4%임.
 - 이러한 차이는 조사에서는 사실혼도 포함하고 있으나 건보자료는 법률 혼만을 포함하는 등의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소득 중 개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절반 정도로 54.1%임.
 - 동 수치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62.2%로 유배우 노인의 47.8%보다 높 은 수준을 보임.
 - 가구도슥 대비 노인개인소득의 비중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구소득 50만원 미만의 경우 81.9%, 500~100만원 미만은 58.8%, 100~200만원 미만 41.4%, 200~300만원 미만 28.6%, 300만원 이상은 22.3%임.
- □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78.9%가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으며, 노인개인소득 중 28.2%를 차지하고 있음.
 - 독거노인의 경우 72.6%,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77.2%, 자녀동거가구는 83.7%의 노인이 사적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노인의 평균 사적이전 소득은 평균 17만6천원의 규모임.
 -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는 독거노인(노인1인가구)의 경우 22만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높으며,
 -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의 평균액이 19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16만 5천원으로 높은 수준임.
 - 사전이전소득의 평균액에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음.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분포>

(단위: %, 명)

소득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빈곤선 100%	62.4(62.4)	39.4(39.4)	19.1(19.1)	37.3(37.3)
빈곤선 120%	11.8(74.2)	13.7(53.1)	5.9(25.0)	10.4(47.7)
빈곤선 150%	7.2(81.4)	10.8(63.8)	11.4(36.4)	10.2(57.8)
빈곤선 180%	7.2(88.6)	6.2(70.1)	10.0(46.4)	7.9(65.7)
빈곤선 200%	2.6(91.2)	4.7(74.7)	8.6(55.0)	5.6(71.3)
빈곤선 300%	3.8(94.9)	10.8(85.5)	22.5(77.4)	13.5(84.7)
빈곤선 300% 이상	5.1(100.0)	14.5(100.0)	22.6(100.0)	15.3(100.0)
(대상자수)	(667)	(1,095)	(1,041)	(2,803)

주: () 밖의 값은 소득구간의 구성 비율, ()내 값은 누적 구성비율임.

자료: 오영희 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 2004년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56.1%가 소득이 최 저생계비의 160%미만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연구에서 삶의 수준지표와 합의 적 박탈점수를 비교해볼 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인 집단이 동일한 속성을 갖는 집단으로 판단되었음.
 - 한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37.3%가 빈곤선 아래에서, 57.8%가 빈곤선 150%이하, 65.7%가 빈곤선 180%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음.
 - 독거노인의 경우 62.4%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81.4가 빈 곤선 150%이하, 88.6%가 빈곤선 180%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음.